“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정 2021. 7. 8
개정 2025. 7. 28
개정 2026. 1. 8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투자업을 영위함에 있어 발생하게 될 보수 및 수수료의 부과기준과 그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기준은 집합투자업, 투자일임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게 되는 보수 및 수수료에 적용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수 :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투자자문, 투자일임 운용 등에 따라 회사가 받는 대가로서 그 종류는 다음 각목과 같다.
   가. 집합투자보수 : 집합투자재산 운용의 대가로서 약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서 인출되는 보수
   나. 판매보수 :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서 약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서 인출되는 보수
   다. 신탁보수 :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의 대가로 약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서 인출되는 보수
   라. 일반사무관리보수 : 일반 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의 대가로 약관에 따라 집합투자기구에서 인출되는 보수
   마. 투자일임보수 :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운용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받는 보수
   바. 성과보수 : 집합투자보수, 투자일임보수에 있어서 성과와 연계되어 부과된 보수
2. 수수료 :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수익증권을 판매하거나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금전적 부담으로서 그 종류는 다

음 각목과 같다.

가. 판매수수료 : 판매회사 또는 회사가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투자자로부터 취득하는 금전을 말하며 수수료 지불시점에 따라 선취판매 수수료와 후취판매 수수료로 구분한다.

나. 환매수수료 : 집합투자자가 집합투자규약에 따라 일정 기간 이내에 집합투자증권을 환매하는 경우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금전을 말한다.

제4조(수수료 및 보수 부과 기준) ① 보수 및 수수료의 부과는 각 상품 및 계약의 개별성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보수 및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1. 상품개발에 투입된 시간, 인력 및 비용
2. 기존 상품과의 차별성
3. 시장에 출시된 경쟁상품 대비 상품의 독창성 및 희소성
4. 상품 운용을 위해 필요한 운용의 전문성
5. 상품 출시 이후 운용 및 관리를 위해 투입되는 시간, 인력 및 비용
6. 해당 상품에 대해 회사가 직·간접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
7. 판매회사별 예상판매 규모 및 판매촉진 계획
8. 사모 집합투자기구 수익자의 투자규모 및 투자예상 기간
9. 기타 판매사, 다른 수익자 등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 등
10. 투자일임 계약에 있어서 대상 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및 투자 규모 등

제5조(투자일임 보수 및 수수료) ① 투자일임 서비스의 대가로 [별지1]에서 정한 투자일임 보수 및 수수료(이하 “기본수수료”) 산정방법에 따라 징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기본수수료는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별지1] 세부계약조건의 기본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연1회 선취로 징구하는 보수로서 계약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회사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③ 성과수수료는 법98조의2와 법시행령99조의2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고객과 합의에 따라 징구하는 보수로서 계약만기일 또는 중도해지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회사 지정계좌로 입금한다.

④ 투자일임 계약에 있어서 투자자가 계약을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별지1] 세부계약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선취수수료를 고객에게 일할 반환한다.

제6조(투자일임의 성과수수료의 수령 기준) 투자일임계약에 있어서 투자자보호와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1. 투자자가 전문투자자인 경우
2. 투자자가 일반투자자인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가. 성과수수료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기준지표 또는 투자자와 합의에 의하여 정한 기준수익률(이하 이 조에서 “기준지표등”이라 한다)에 연동하여 산정될 것

나. 운용성과(투자일임재산의 운용 실적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보다 낮은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보다 적은 운용수수료를 받게 되는 보수체계를 갖출 것

다. 운용성과가 기준지표등의 성과를 초과하더라도 그 운용성과가 부(負)의 수익률을 나타내거나 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성과수수료를 받지 아니하도록 할 것

라. 그 밖에 성과수수료의 산정방식,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제7조(투자일임 중도해지 수수료) ① 투자자가 투자일임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투자자에게 부과되는 수수료는 [별지2] “투자일임 수수료 산정방법”과 같다.

② 투자자의 요청으로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중도해지 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

제8조(투자일임 계약의 증액 및 감액) ① 투자일임 계약에 있어서 계약

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증액금액에 계약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한다.

② 계약금액이 감액되는 경우에는 감액금액에 운용경과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부과하며, 수수료를 미리 지급 받은 경우에는 감액금액에 계약 잔여일수를 계산하여 수수료를 반환한다.

제8조(설명의무)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에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제13조에 따라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9조(수수료 고지) 법 제99조제1항 및 법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일반투자자에게 제공하는 투자일임 보고서에 수수료의 부과 시기 및 금액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보수 및 수수료 결정 절차) 보수 및 수수료에 대한 결정은 유가증권 신고서·등록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준법감시인 및 대표이사의 최종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1조(공시) 이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고,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 칙 (2026. 1. 8)

이 기준은 2026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1]

투자일임 세부계약조건

1. 계 약 기 간 : 20___년 ___월 ___일부터 20___년 ___월 ___일까지

2. 계 약 자 산 : 금_____원

3. 거래증권사 및 계좌

증권사		계좌번호		계좌명	

4. 고객/회사에 대한 통지방법(E-MAIL 기재 필수)

구 분	고 객	회 사
□ 주 소		
□ E-MAIL		
□ FAX		
□ 전화[필수]		
□ 기타 참조		

5. 투자일임 서비스 수수료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참조)

기본수수료	계약자산가액의 1.0% (선취)
성과수수료	고객과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한다

6. 해지수수료(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수수료

해지수수료	기본수수료 - [투자(자문·일임)자산 X 1.0% X (운용일수/365)]

7. 투자일임 담당자 :

8. 고객 요청 및 제한 사항

고객 요청 및 제한 사항

1. 고객 요청 및 제한 사항 없음 [ ]
2. 고객 요청 및 제한 사항 있음 [ ]
3. 2번(고객 요청 및 제한 사항 있음) 선택 시 별지를 작성한다.

20 년 월 일

[별지2]

투자일임 수수료 산정방법

1. 수수료율

□ 수수료는 기본수수료와 성과수수료로 구분

□ 기본수수료는 계약자산의 (1.0)%. 다만, 동 계약기간 만료 시점에 손실이 발생한 재계약에 대한 운용수수료는 최초 자본계약(Capital Commitment)에 기초

□ 성과수수료는 법 제98조의2와 동법 시행령 제99조의2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고객과 합의에 따라 결정. 단, 동 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하이워터마크(High Watermark)에 따라 재계약에 대한 성과수수료는 기존의 손실을 만회한 이후의 자본계약에 기초. 또한, 계약기간 중 자산이 증액 또는 감액되는 경우, 증액 및 감액되는 자산에 대한 기준수익률은 투자자가 회사로부터 투자자문 서비스 또는 투자일임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

▶ **수수료(보수)율 기준**

계약금액	기본 수수료	성과 수수료
고객 자산	연 (1.0)%	고객과 별도로 합의하여 결정

2. 수수료 지급방법 및 지급시기

□ 기본수수료의 지급은 선취 일시납으로 하며 계약일 5영업일 이내에 지급하며, 계약 연장에 따른 기본수수료의 지급에도 동일하게 적용

□ 계약기간 중 증액이 있는 경우, 증액 금액에 대한 기본수수료는 초기계약 만료일까지 서비스를 제공받는 기간에 비례하여 일할 계산하고, 선취 일시납으로 증액일 5영업일 이내에 지급

□ 계약기간 중 일부 또는 전부해지가 있는 경우, 기본수수료는 일할 계산하여 계약자에게 5영업일 이내에 환급처리

□ 성과수수료 발생 시 성과수수료의 지급은 후취 일시납으로 하며,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시점, 또는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5영업일 이내에 지급

계약기간 중 중도해지 시 환급수수료
기본수수료 - [투자일임재산 X 1% X (운용일수 / 365)]

3. 평가자산의 계산

□ 주식 및 전환사채의 매입.매도가격 평가 : 한국증권거래소에서 형성된 계약체결일 전 영업일의 종가. 종가가 없는 경우에는 최근 일에 형성된 종가로 평가

□ 기타자산 : 고객과 합의된 가격

□ 미실현이익의 평가

✓ 시장가격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없는 경우(예: 공모주 등)는 편입 단가로 계산

✓ 배당락의 경우 배당금 산정은 전년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평가

✓ 주식배당, 유·무상의 경우 권리락으로 인한 미상장 주식은 시장가격으로 평가

4. 평가자산 수익률의 계산

평가자산 수익률은 계약시점에서의 평가자산 대비 평가기준일 현재 평가자산의 수익률로 계산

5. 산정기준 등의 변경

계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변경 사항 등은 고객과 회사가 합의하여 결정